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 시책에 인구감소지역 포함〉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9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25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6.
3. 회부연월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u>혁신도시</u>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u>혁신도시</u>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 <u>혁신도시시책</u>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u>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u> 활성화) ① --- ----- ----- ----- ----- ----- <u>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u>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② 정부는 <u>혁신도시시책</u> 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u>제1항에 따른 시책</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u>혁신도시시책</u> 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u>혁신도시</u>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 ----- <u>제1항에 따른 시책</u> ----- ----- ----- <u>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혁신도시”란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고 혁신여건·정주여건을 개선한 미래형 도시¹⁾임.

혁신도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제29조제1항²⁾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혁신도시법」 제2조(정의)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혁신도시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표 2] 혁신도시시책 추진 및 혁신도시 지정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³⁾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략)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u>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분권균형발전」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⁴⁾으로, 정부는 2023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

3)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3호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도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본계획」에 따라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의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추진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책 마련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관 직원 이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관하여 지역간 이전⁶⁾이 있는데 기존 혁신도시는 지역발전거점 조성이라는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 간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모든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2023. 12. 1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6)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배치 촉구, 2023.1월, 7월)

↔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성명(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촉구, 2023. 3월, 5월, 11월)

비수도권 지역(엄태영의원안)으로 확대하거나, 혁신도시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박희승의원안)하거나,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김윤덕의원안) 다양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지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 다양한 법안 발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제22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지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발의일	소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2201808)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	'24.07.16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9)	엄태영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비수도권) 이전	'24.07.04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52)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24.06.05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45)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24.06.05	국토교통 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43)	김윤덕 의원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 허용 특례	'24.06.05	행정안전 위원회

참고로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혁신도시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내에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혁신도시법」에 대해 우선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⁷⁾

문 의 처
02)6788-5456

7)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8호, 2024. 7. 16. 발의)

참고 1

혁신도시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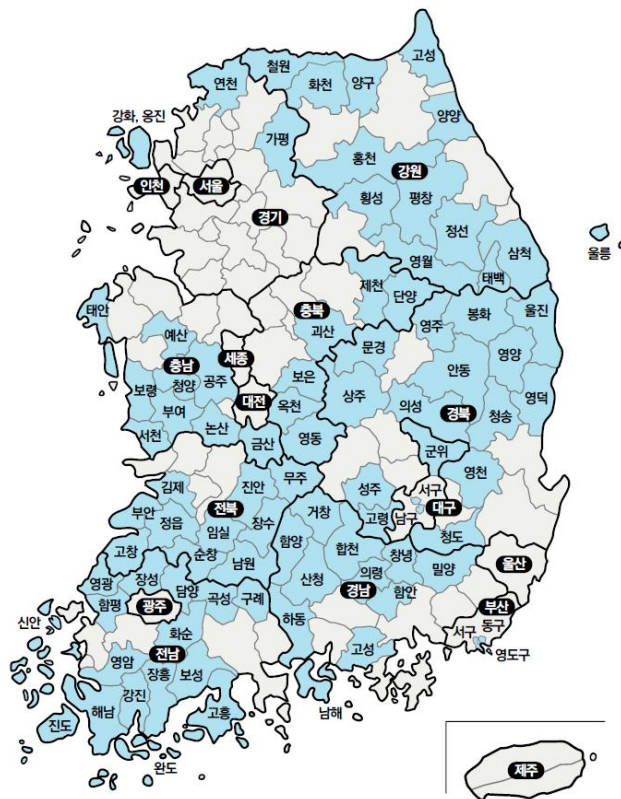
지역	위치	면적 (km ²)	인구(천명)		이전완료 공공기관 (개)	사업비 (억원)
			계 획	현 황 (‘23.12월)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0.935	7	7.3	13	4,127
대구	동구	4.216	22	17.8	10	14,501
광주 · 전남	나주시	7.361	50	39.9	16	14,175
울산	중구	2.991	20	18.9	9	10,390
강원	원주시	3.585	31	29.4	11	8,396
충북	진천군, 음성군	6.899	39	30.9	11	9,969
전북	전주시, 완주군	9.852	29	29.0	12	15,229
경북	김천시	3.812	27	23.6	11	8,676
경남	진주시	4.093	38	34.0	11	10,577
제주	서귀포시	1.135	5	4.8	6	2,939

*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20.10월)은 완료됐으나, 구체적인 입지, 면적 등이 정해지는 후속 절차(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는 이뤄지기 전임.

참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 군위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21.10.19.)에는 경상북도에 속했으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23.7.1)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

자료: 행정안전부